

위임전결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'22년 종합감사결과(감사실, '23.2.1)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업무의 전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 개정 추진

2. 주요 개정 내용

위임전결기준표(별표1)의 재무관리처 업무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항목 (①운영계획 수립, ②실태점검, ③점검 결과보고)의 전결권을 상향하여 '내부회계관리규정'과 제도 운영기준을 일원화

【 위임전결규정 개정(안) 요약 】

구 분	현 행	개 정
카. 내부회계관리제도	-	-
(1) 운영계획 수립	부서장 전결	본부장 전결
(2) 운영실태 점검	팀 장 전결	부서장 전결
(3)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	부서장 전결	본부장 전결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40,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류동하(rdh870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(051)955-5315
- 팩스번호 : (051)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감사처분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

※ 별첨 : 위임전결규정 일부규정개정안

[별첨]

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[별표](제3조 관련) <u>위임전결기준표</u>	[별표](제3조 관련) <u>위임전결기준표</u> * 개정내용 붙임 참조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	내부회계관리규정과 제도 운영기준 일원화

[붙임]

위임전결기준표 (제3조 별표 관련)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
☐ 재무관리처								☐ 재무관리처							
업무내용	영업부서		본사부서				비고	업무내용	영업부서		본사부서				비고
	팀장	부서장 (출장소장)	팀장	부서장	본부장	사장			팀장	부서장 (출장소장)	팀장	부서장	본부장	사장	
1. ~ 2. (생략)								1. ~ 2. (현행과 같음)							
3. 회계, 경리								3. -----							
가. ~ 차. (생략)							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							
카. 내부 회계관리제도								카. -----							
(1) 운영계획 수립				○				(1) -----					○		
(2) 운영실태 점검			○					(2) -----				○			
(3)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				○				(3) -----					○		
4. ~ 5. (생략)								4. ~ 5. (현행과 같음)							